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일환으로 금연·절주 등과 같은 국민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과 흡연경고문구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8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내 흡연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흡연경고문구등의 표기
 - 종전의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되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뿐 아니라 이에 관한 그림 등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흡연경고문구등의 표기

- 담배판매 수입이 지방세 수입이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배는 우리고장에서 삼시다!” 등과 같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담배 판촉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함.

- 주류 광고시 음주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 종전의 주류 용기에만 표기하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등 음주 경고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반드시 표기토록 함.

-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광고 금지

- 국민들의 건강의식을 오도하는 주류광고나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등을 알리는 광고를 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광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인상함.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설치

- 국민들을 만성질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수명 75세의 건강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설치함.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 관련 법규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형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신고 복지시설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시설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7개 법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을 유지하되, 겸용이 가능한 것은 겸용활용이 가능토록 설비기준 완화
- 10~3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겸용 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약한 설비 및 인력기준 대폭 축소
- 그 동안 개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었던 10인 미만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신고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자격요건중 사회복지사 자격을 2급에서 3급으로 완화하고, 2002년 6월 14일 현재 미신고시설을 운영중인 시설장이 개별법령상 시설로 신고시 시설장 자격을 5년 유예함.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허위·부정 장애인 방지 및 장애 판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시설의 설치·운영 활성화 및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장애인단의 적정성 담보 및 진단기관과 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장애인단 기관지정제도를 도입함(안 제3조 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인단).
- 장애인생활시설에 우선 입소하는 대상자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부족등 시설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한 자로 시설우선 입소대상을 확대함(안 제33조 별표 4의 III. 시설운영의 기준).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고 30인 미만 시설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여 서민층 및 중산층 장애인의 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함(안 제33조 별표 4의 I. 공통기준, II. 시설별 기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도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각계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시설설치를 용이하게 함(안 제33조 별표 4의 I. 공통기준).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 및 종사인력에 관한
신고기준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게 용어를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랑인복지시설 설치·운영규칙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현재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노숙자를 부랑인의 개념에 포함시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제1호).
- 입소여부 심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여 입소심사위원회의 개최시한을 현
실화함(안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3항).
- 시설에 입소된 자를 뜻하는 원생을 입소자로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새롭게
바꿈(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27조 제2항 등).
- 당면퇴소 사유에 현행 연고자 인계 외에 입소자가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 현행 10인 이상 수용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의 신고기준을 30인 이상, 10인~30인 미만,
1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시설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을 완화함(안 제11
조 및 제12조).
- 부랑인시설이 아동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사문화된 아동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
제2항 및 제19조).
- 시·도지사 외에 보호기관에게도 직업보도 직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줌(안 제28

조 제2항).

- 통계보고의 보고기한을 완화하여 관련기관 및 시·도의 보고 업무 부담을 경감함(안 제29조).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 및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위하여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층 및 중산층 노인의 시설선택 및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실비보호대상의 질환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비노인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비이용대상자의 자격기준 중 월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한정함으로써 실비보호대상자의 시설입소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4조 제1항 제2호).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고 10~30인 미만, 10인 미만의 시설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소규모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고 서민층 및 중산층노인의 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함(안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9조 제1항 별표 9).
- 각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장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설설치를 용이하게 함(안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2조 제1항 별표 4, 제29조 제1항 별표 9).
- 무료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인원이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보호대상자의 입소인원 기준을 현행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층이 무료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안 제18조 제2항).
- 무료 및 실비노인시설의 입소정원을 현행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유료 노인시설의 입소정원을 폐지하여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입소자들의

선택기회를 확대함(안 제17조 제1항 별표 2 제22조 제1항 별표 4).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류를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가노인시설의 설치를 활성화 함(안 제28조 제1항 제5호).

- 2002년 6월 14일 현재 미신고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가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할 경우 시설장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2007년 7월 3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용이하게 함(안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골자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시 첨부서류 중 시설장 주민등록표초본을 감축하여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한 민원편의를 도모함.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설비기준을 아동 30인 이상, 10~30인 미만, 10인 미만인 시설로 세분하여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시설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함.
- 아동 10~30인 미만인 시설의 아동 1인당 거실면적을 현행 3세 미만 25제곱미터 이상, 3세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령구분 없이 25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아동 10인 미만 시설은 규정치 없음.
- 아동 10인 미만인 시설의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설정에 맞게 소화기 등을 갖추도록 함.

□ 시행령 개정안 주요골자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설치를 용이하게 함(안 별표 4).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를 추가하여 시설보호아동의 연령층을 반영함(안 별표 4).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배치기준을 아동 30인 이상, 10~30인 미만, 10인 미만인 시설로 세분화함으로써 소규모시설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함(안 별표 5).
- 시설 종사자 명칭을 변경하여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함(안 별표 4, 별표 5).

아동학대 예방대책 발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학대받은 아동의 효과적인 보호방안과 학대행위자의 치료 및 상담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공익광고 등의 실시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인·교사·시설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 아동학대발견율(아동 1,000명당):한국 0.18명, 미국 122명, 일본 0.77명
-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학대사례의 객관적인 판단 및 처리를 위해 [아동학대 사정척도]를 개발·보급하고,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평가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동보호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도모해 나갈 것임.
-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중앙 1개소 및 지방센터 17개소

-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된다는 사실을 감안, 아동양육기술 및 대안적 훈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중·고교생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것임.
- 또한 모·부자 및 저소득층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방치(방임)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보육료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아동학대예방센터에 그룹홈을 운영하여 학대아동의 쉼터로 활용하는 한편, 간호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중산층 가정 주부 인력을 활용하여 학대받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위탁가정으로 지정·운영할 것임.
- 2003년까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의 우려없이 학대받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임.